

의안
번호

76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2. 11. 22.

전문위원 김 동 성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양순임의원 외 15명

나. 의안번호 : 제76호

다. 제출일자 : 2022. 11. 10.

라. 회부일자 : 2022. 11. 17.

2. 제안이유

-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무장애 시설 인증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따라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외부기관을 활용하여 관내 건물이 인증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구청장의 책무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홍보 추가(안 제4조)
- 나. 무장애 시설 인증 규정 삭제(안 제7조)
- 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4.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 나. 예산 조치 : 필요시 조치
-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2. 11. 10. ~ 2022. 11. 16.
 - 의 견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개요

- 본 개정안은 검증된 인증체계를 갖춘 외부기관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취득할 시 수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공공시설물을 평가하여 인증해주는 제도임.
- 상위법인 「장애인등편의법」¹⁾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등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 의무화되어 장애인 등의 이용 편의가 높지만, 이외 민간 건축물의 경우 각종 장애물로 인하여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음.
-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공공 건축물 인증 의무시설이 아닌 비영리법인과 민간이

1)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9까지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들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이하 "의무인증시설"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제2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을 받은 의무인증시설의 시설주는 제10조의3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2. 3., 2021. 6. 8.>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자가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 기준·절차,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절차, 인증기관 지정 기준·절차, 그 밖에 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21. 6. 8.>

신축하는 다중이용시설 등 공공성이 강한 민간 건축물이 ‘인증을 취득할 시, 소요되는 수수료 비용 지원을 통해 인증취득을 유도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주요내용

- 안 제8조의2 신설은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2)의 대상시설 중 같은 법 제10조의2제3항3)에 따른 의무인증 시설을 제외한 비영리법인과 민간이 신축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도 인증을 취득할 시 인증 수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함.

인증 수수료

구 분		300㎡미만 (제1구간)	300㎡~1,000㎡ (제2구간)	1,000㎡~3,000㎡ (제3구간)	3,000㎡~10,000㎡ (제4구간)	10,000㎡이상 (제5구간)
편의시설	기존 수수료	4,030,000				
	적용요율	0.5	0.8	1.0	1.2	1.5
	변경 후 수수료	2,015,000	3,224,000	4,030,000	4,836,000	6,045,000
예비인증시설	기존 수수료	2,060,000				
	적용요율	0.5	0.8	1.0	1.2	1.5
	변경 후 수수료	1,030,000	1,648,000	2,060,000	2,472,000	3,090,000

- 2)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 3)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이하 “의무인증시설”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제2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을 받은 의무인증시설의 시설주는 제10조의3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아야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가목의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자가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안 제7조 및 제10조제3항의 후단 개정은

무장애 시설인증과 관련한 기준 및 절차와 인증위원회 설치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4)에 따르면,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분야별로 각 1명 이상의 심사전문인력(상근인력 3명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 등 자격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자치구 차원에서 무장애 시설 인증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무장애 시설인증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것임.

○ 그 외 개정은 안 제8조의2에 인증취득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안 제2조제3호 및 안 제4조제7호의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 구청장의 책무에 인증 제도 홍보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기존 제7조의 무장애 시설인증 관련 조문 삭제에 따라 안 제6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제6호의 위원회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고, 또한 조례 운영상 중복되고 불필요한 제15조(자료제출 및 출석 요구) 및 제17조(사상)의 조문을 삭제한 것임.

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제11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이하 "인증기관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인증기관 신청자가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인증기관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인증기관 신청자가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8. 3., 2021. 12. 3.>

1.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2. 제2항에 따른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처리규정

4. 인증과 관련한 연구실적 등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인증기관은 전문분야별로 각 1명 이상의 심사전문인력(인증기관의 심사전문인력 가운데 상근인력은 3명 이상이어야 한다)을 보유해야 한다. 이 경우 심사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2. 4. 13., 2015. 8. 3., 2021. 12. 3.>

1.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
2.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5.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6. 장애인복지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장애인 등 누구나 공공건물 및 다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전반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을 취득할 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입법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